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27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김정호·전진숙·어기구

임미애 · 박희승 · 허종식

이연희 · 정성호 · 전재수

신영대 • 이수진 • 윤후덕

최기상 · 김남희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이 신설됨에따라 시·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됨.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제10조제1호의2 신설 등).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 본계획"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을 "에너지위원회를"로 한다.

제1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계획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의 공개 및 개선의견의 제시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에너지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제5조(적용 범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u>「저탄소 녹색성장</u>	「기후위기 대응을 위
<u>기본법」 제39조</u> 에 따른 기본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법」 제3조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	
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하여 <u>「저탄소 녹색</u>	
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
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신<u>설></u>

<신 설>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 운영) 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 를 정성 · 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 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지사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지역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제6항 에 따른 의견 제시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⑧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11. (생략)

-		
_		
_		게
<u>L</u>	<u> </u> 기위원회를	
(2	② ~ ⑧ (현행과 같음)	
세1	.0조(위원회의 기능)	
_		
1	. (현행과 같음)	
1	의2. 지역계획에 대한 점검	<u>결</u>
	과보고서의 공개 및 개선의	<u>견</u>
	의 제시에 관한 사항	

2. ~ 11. (현행과 같음)